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1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이학영・임호선・박정현

이정문 • 이수진 • 한정애

김영배 · 한민수 · 김성환

윤호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(발주자를 포함하며, 이하 "도급인"이라 한다)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(이하 "수급인"이라 한다)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 "임금비용"이라 한다)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(前月)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 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, 시 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 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·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·수급인·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(안제7조의3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3의 제목 중 "확인"을 "확인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도급인·수급인·건설근로 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절차"를 "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의3(임금비용의 구분지급	제7조의3(임금비용의 구분지급		
및 <u>확인</u>) ① ~ ③ (생 략)	및 <u>확인 등</u>) ① ~ ③ (현행과		
	같음)		
<u><신 설></u>	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		
	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		
	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		
	으로 관리하고, 도급인·수급인		
	•건설근로자에게 이에 대한		
	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		
	하여 임금정보시스템(이하 "정		
	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		
	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		
<u>④</u> 제1항부터 <u>제3항</u> 까지의 규	<u>⑤</u> <u>제4항</u>		
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			
급,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			
및 <u>절차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	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		
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			